제744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

☐ 건　　명 : 정릉터널 정밀점검 용역

☐ 심 사 일 : 2013. 7. 29.

☐ 사업개요

○ 용 역 비 : 71,640천원

○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0일

○ 사업규모

- 3차로×2열, 연장 1,650m

○ 발주부서 : 북부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

☐ 심사결과 : 적 정 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〔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〕 ■ 대 상 □ 미대상	○ 대상시설물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 6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관리 시행되는 1종시설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(내부순환로)에 설치된 시설물로 안전성과 기능성 등을 보전하기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시행의 필요성 인정됨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조정 71,640천원 → 56,700천원 (감 14,940천원, 대비 20.8%) · 시설물복잡도: 1.15 → 1.10 적용 · 물가상승율 : 10% → 2.2% 적용 · 보고서인쇄비 : 3,255천원 → 969천원(감 2,286천원) · 자문비조정(1인) 150천원 적용 · 차량운행비 제외 · 고소작업차 : 사업소 제외(자체보유 장비 사용) · 현지보조인부 : 22인(특수인부) → 16인(보통인부) 적용 ※ 코아채취는 최소화 하고 필히 정산할 것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대가조정시 적정대가 적용, 용역비 집행 및 정산철저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발주 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 할 것